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4.08.14 현재, 세전)

구분	내용														
상품특징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유형	저축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기본금리	연 0.10%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0%의 우대금리 제공  만 6세 이하 가입자 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우대금리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참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수수료 구분</th> <th>이 통장으로 거래 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당행 자동화기기 이용</td> <td>마감후 현금인출</td> <td rowspan="5">면제</td> </tr> <tr> <td>타행이체</td> </tr> <tr> <td>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td> <td>타행이체</td> </tr> <tr> <td colspan="2">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td> </tr> <tr> <td colspan="2">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td> </tr> </tbody> </table>		수수료 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수수료 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상품전환	X	불가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 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상품 특징 :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통장


###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4.08.14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규: 영업점</li><li>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li></ul> <b>상품유형</b>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예금)
기본금리	연 0.1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0%의 우대금리 제공  만 6세 이하 가입자 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 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 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합니다. ※ 만 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 합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수료 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미감후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입금제한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이 제한됩니다. (예금주 본인의 입금도 제한됨)		
이용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li> <li>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li> <li>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li> <li>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 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li> </ul>		
부가서비스	별칭 및 부기명 인자 서비스 적용 가능합니다. (단, 글자수 제한 있음. 예시: 000 행복지킴이통장)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식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li> <li>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li> </ul>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계약해지 방법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채널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 있음)		
통장발행	이 예금은 통장이발행이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li> </ul>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구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ul> </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b>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b>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예금자보호</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해당</b>   </div>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3 유의사항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가압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b>압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li> </ul>
<b>가압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li> </ul>
<b>질권설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li> </ul>
<b>출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b>경과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li> </ul>